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審 査 報 告 書

2007. 3. 28.  
행 정 위 원 회

##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3월 15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22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2007.3. 26)

##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배 상필)

###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안 심의 및 의사 진행을 보좌하는 별정직 전문위원중 6급(상당)직 이하를 신설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일부 별정직명을 폐지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6급(상당)직 이하의 구의회 전문위원을 신설함에 따라 임용자격 기준 마련(별표1)
- 체육지도사 및 영양사 임용자격기준 개정
  -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규칙 별표6호, 별표13호
- 일반직으로 전환된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신규임용 연령기준 삭제 (안 제4조제4항)
-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제한 기준 중 부녀(가정복지)상담원 분야의 직명폐지로 단서조항 삭제

- 일부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별정직명 삭제(별표1)
  - 부녀청소년·아동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 위험물취급분야, 행정관리분야 중 공과금요원, 기타분야 등은 일반직으로 전환된 별정직명을 삭제함

###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완섭)

-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29일 개정공포 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6. 7. 1 시행, 2007. 6. 30일까지 동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함)에 의하여 구의회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의 업무를 행하는 전문인력 보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인력보강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 전문위원이 5급 2명에서 6급 이하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어 6급상당 별정직 2명을 증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중 일반직 전환에 따른 “구청 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의 분야와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여성복지상담원”, “가정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훈련교사”, “가스안전계장”, “고압가스관리기사”, “공과금요원” “광고물관리원” 등의 분야를 삭제하고,
- 구의회 관련분야 별정직6급상당, 7급상당과 구본청 위생분야의 영양사 7급상당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4. 修正案 要旨

- [별표 1] 의 도표 내 “직명(위) 및 업무구분”을 “직명(위) 및 업무분야”로의 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다른 부분과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현행대로 “직명(위) 및 업무구분”으로 하여야 하며, 5급상당 및 6급상당의 직무내용을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로 구체적 기재

#### 5. 審査結果 : 修正案 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별표1의 “직명(위) 및 업무분야”를 “직명(위) 및 업무구분”으로 현행과 같이 하고
- 5급 상당 및 6급 상당 직무내용의 “의안심의 및 검토보고”를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로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7. 3. .

제안자 : 윤준용 의원

## 1. 수정 이유

- [별표 1] 의 도표 내 “직명(위) 및 업무구분”을 “직명(위) 및 업무분야”로의 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다른 부분과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현행대로 “직명(위) 및 업무구분”으로 하고, 5급 상당 및 6급 상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2. 주요 골자

- 별표1의 “직명(위) 및 업무분야”를 “직명(위) 및 업무구분”으로 현행과 같이 하고
- 5급 상당 및 6급 상당 직무내용의 “의안심의 및 검토보고”를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로 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 6. 구의회 관련분야

현 행				개정안					수 정 안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 거	직명(위) 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 내용	임용자격	근거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근거
구의회 전문위원	5급상당	<u>의안 심의 및 의사 진행보좌</u>	(생 략)		구의회 전문위원	5급 상당	<u>의안 심의 및 검토 보고</u>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7.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안과 같음)	(현행 과 같음)	· <u>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u> · <u>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u>	
			<신 설>		<u>구의회 전문위원</u>	6급 상당	<u>의안 심의 및 검토 보고</u>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안과 같음)	(개정 안과 같음)	· <u>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u> · <u>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u>	

							7.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 설>		<u>구의회</u> <u>전문위원</u>	7급 상당	<u>의안 심의</u> 및 <u>검토 보고</u>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삭 제>	<삭 제>	<삭 제>
속기사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생 략)	(생 략)		(현행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 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안 심의 및 의사 진행을 보좌하는 별정직 전문위원중 6급(상당)직 이하를 신설하고, 일반적으로 전환된 일부 별정직명을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구의회 관련분야 임용자격기준 개정

- 6급(상당)직 이하의 구의회전문위원을 신설함에 따라 임용자격기준 마련(별표1)

### 나. 체육지도사 및 영양사 임용자격기준 개정

-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규칙 별표6호, 별표13호

### 다. 일반적으로 전환된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신규임용 연령기준 삭제

(안 제4조제4항)

-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제한 기준중 부녀(가정복지)상담원 분야의 직명폐지로 단서조항 삭제

### 라. 일부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별정직명 삭제(별표1)

- 부녀청소년·아동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 위험물취급분야, 행정관리분야중 공과금요원, 기타분야 등은 일반적으로 전환된 별정직명을 삭제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제2항

○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규칙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72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 : 2007. 3. 12 ~ 3. 19

○ 규제심사 : 해당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하나”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 내지 제4호, 제5호중 공과금요원란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호중 지도사란, 제6호중 구의회전문위원란 및 제7호 위생분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5. 행정관리분야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용 자격	근거
체육지도사	6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생활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여가생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도</li> <li>체육교실 및 여가교실 등 운영</li> <li>여가생활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학 관련 학사학위소지자로서 5년 이상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에 경력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한 자</li> <li>학사학위소지자로서 7년 이상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에 경력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한 자</li> <li>일반직 7급, 별정직 7급상당 또는 전임계약직 다급이상으로 6년 이상 체육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li> </ol>	
	7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생활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여가생활진흥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도</li> <li>체육교실 및 레저교실 등 운영</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학 관련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한 자</li> <li>학사학위소지자로서 2년이상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 경력이 있는 자</li> <li>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 경력 있는 자</li> <li>일반직 8급, 별정직 8급상당 이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체육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li> <li>4년제 대학의 체육특기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선수경력이 있는 자</li> </ol>	

6. 구의회 관련분야

직명(위) 및 업무분야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구의회 전문위원	5급상당	의안 심의 및 검토 보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li> <li>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4.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li> <li>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 력자</li> <li>7.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li> </ol>	
	6급상당	의안 심의 및 검토 보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li> <li>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li> <li>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7.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li> </ol>	
	7급상당	의안 심의 및 검토 보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li> <li>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li> <li>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5.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 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6.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li> </ol>	

## 7. 위생분야

직명(위) 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영양사	7급상당	구내식당 급식관리	1.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이상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환자급식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2.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4년이상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자격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p> <p>② ~ ③ (생 략)</p> <p>④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은 다음과 같다. <u>다만,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경우 25세이상 40세이하로 하되, 상담원 경력자를 동일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 3. (생 략)</p> <p>⑤ (생 략)</p> <p>제10조(휴직) (생 략)</p> <p>1. <u>병역법에</u>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p> <p>2. (생 략)</p>	<p>제4조(임용자격) ①----- <u>각호의 어느하나</u>-----</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p> <p>-----<u>&lt;단서 삭제&gt;</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휴직) (현행과 같음)</p> <p>1. 「<u>병역법</u>」-----</p> <p>-----</p> <p>2. (현행과 같음)</p>

[별표1]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신·구 대비표**

2.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

현 행				개 정 안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구 청 가 정 복 지 과 장	5 급 상 당	· 여성, 아동, 청 소년, 노인복지 행정 총괄	1. 4년제대학 졸업자 로서 관련분야 행 정직공무원 경력 10년이상인 자 2. 일반행정직공무원 경력 15년이상으 로 6급에서 4년이 상인 자 3. 기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한 자	<삭 제>			
여 성 복 지 상 담 원 (부녀상담 원)	6 급 상 당	· 부녀상담처리 · 일반상담원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1.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서 사회복 지에 관한 행정분 야에 근무한 경력 이 12년이상인 자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3. 여성복지상담원(부 녀상담원)7급상당 으로 근무한 경력 이 3년 이상인 자	<삭 제>			
	7 급 상 당	· 요보호자 조사, 상담 및 선도 · 가정문제 상담, 지도 및 계몽 · 모자가정의 보 호와 모자복지 상담 · 기타 선도보호 사업 목적달성 을 위하여 필요 한 업무	1. 4년제 대학 사회 사업학과 졸업자 2. 초·중·고등학교 교 사로 3년이상 경 력자 3. 여성복지상담원(부 녀상담원)8급상당 으로 근무한 경력 이 3년이상인 자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여성복지 상 담 원 (부녀상담 원)	8 급 상당	· 요보호자 조사, 상담 및 선도 · 가정문제 상담, 지도 및 계몽 · 모자가정의 보 호와 모자복지 상담 · 기타 선도보호 사업 목적달성 을 위하여 필요 한 업무	1.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서 사회 복지에 관한 행정 에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2. 사회복지사 3급이 상 자격증을 소지 한 자	<삭 제>			
가정복지 상 담 원	6 급 상당 ( 수 석상 담 원)	· 가정상담업무 총괄 · 일반상담원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1. 4년제 대학의 사회 사업학과, 사회복지 학과, 심리학과 를 졸업한 자로서 · 사회복지사 1급 자 격증소지자 또는 ·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서 사회 복지에 관한 행정 에 근무한 경력이 12년이상인 자 2. 일반상담원(7급상 당)으로 근무한 경 력이 5년이상인 자	<삭 제>			
	7 급 상당 ( 일 반상 담 원)	· 가정문제 연구 조사 · 가정문제 상담 · 가족치료	1. 4년제 대학의 사회 사업학과, 심리학 과를 졸업한 자로 서 · 사회복지사 2급 자 격증소지자 또는 ·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서 사회 복지에 관한 행정 에 근무한 경력이 7년이상인 자 2. 일반상담원(8급상 당)으로 근무한 경 력이 3년이상인 자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가정복지 상 담 원	8 급 상당 ( 일 반상 담 원)	· 가정문제 연구 조사 · 가정문제 상담 · 가족치료	1. 전문대학의 사회 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를 졸업한 자로서 · 사회복지사 3급이 상 자격증 소지자 ·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서 사회 복지에 관한 행정 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삭 제>			
이동복지 지 도 원 ( 청 소 년 지도원)	7 급 상당	· 아동 및 임산 부의 상담 · 아동의 일시보 호 · 수용아동 및 보호 아동의 조사 지도 · 청소년문제 지도상담	1. 당해분야 관련학 과 학사 학위소지 자 2.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 원(8급상당)으로 3 년이상 근무경력 이 있는자 3. 국민학교 또는 중, 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자	<삭 제>			
	8 급 상당	· 아동 및 임산 부의 상담 · 아동의 일시 보호 · 수용아동 및 보호 아동의 조사지도 · 청소년문제 지도상담	1. 전문대학 또는 이 와 동등이상의 학 교에서 2년이상 당해분야 관련학 과를 전공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5년이상 사회사업에 관한 행 정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삭 제>			

훈련교사	7 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녀자의 생활 개선 계몽 및 교양지도</li> <li>· 직업상담 및 알선</li> <li>·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연구교육</li> <li>· 기타 기능교육</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3급면허 소지자</li> <li>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li> <li>3.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 또는 기능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이상 실무경력자</li> </ol>	<삭 제>
	8 급 상당 (기 술교 도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녀자의 생활 개선 계몽 및 교양지도</li> <li>· 직업상담 및 알선</li> <li>·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연구교육</li> <li>· 기타 기능교육</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li> <li>2. 당해분야 면허증 소지자로서 직업훈련교사 또는 해당 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경력자</li> </ol>	<삭 제>

### 3. 사회복지분야

현 행				개 정 안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사회복지 전문요원	7 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보호대상자 조사</li> <li>·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li> <li>·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li> </ul>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자	<삭 제>			

4. 위험물취급분야

현 행				개 정 안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가스안전 계장	6급 상당	가스행정 및 안 전관리	1. 가스기술사 자격 증 소지자 2. 가스기사 1급 자 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3. 7급(상당)이상 공 무원으로서 가스 행정분야 5년이상 근무경력자로 고 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 정에 적합한 자	<삭 제>			
고압가스 관리기사	7급 상당	가스행정 및 안 전관리	1. 가스기사 1급 자 격증 소지자 2. 가스기사 2급 또 는 고압가스기계, 화학취급기능사 1 급으로서 당해분 야 4년이상 근무 경력자 3. 8급(상당)이상 공 무원으로서 가스 행정분야의 근무 경력 3년이상인 자로 고압가스안 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 합한 자	<삭 제>			
	8급 상당	가스행정 및 안 전관리	1. 가스기사 2급 또 는 고압가스기계, 화학취급기능사1 급 자격증 소지자 2. 고압가스기계, 화 학취급기능사 2급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3년이상 근 무경력자 3. 9급(상당)이상 공 무원으로서 가스 행정분야의 근무 경력 3년이상인자 로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시행령 제 11조 규정에 적합 한 자	<삭 제>			

5. 행정관리 분야

현행				개정안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지도사	6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생활계획 및 수립 시행</li> <li>여가생활 프로그램의 발·보급 및 도</li> <li>체육교실 및 여가교실 운영</li> <li>여가생활 관련단체의 성 및 지원</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년제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 및 지도분야 경력이 2년이상이고,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li> <li>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 및 지도분야 경력이 4년이상이고,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li> <li>일반직 7급(별정직 7급상당 포함)으로 3년이상 건전생활분야 행정근무 경력자</li> <li>기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한 자</li> </ol>	체육 지도사	6급 상당	(현행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학관련 학사 학위소지자로서 5년이상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 지도분야에 경력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li> <li>학사학위소지자로서 7년이상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 지도분야에 경력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li> <li>일반직 7급, 별정직 7급상당 또는 전임계약직 다급이상으로 6년이상 체육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li> </ol>
	7급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생활진흥에 관한 계획 및 수립 시행</li> <li>여가생활진흥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도</li> <li>체육교실 및 레저교실 운영</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년제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li> <li>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 및 지도분야 경력이 2년이상인 자</li> <li>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 및 지도분야 경력이 3년이상인 자</li> <li>일반직 8급으로 3년이상 건전생활분야 행정근무 경력자</li> </ol> <p>5. &lt; 신 설 &gt;</p>				7급 상당

현 행				개 정 안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공과금요 원	8 급 상당	· 공과금 자료 의 정리보존 · 공과금 업무 분석	1. 전문대학이상 졸업 자로서 6월이상 전 산교육을 이수하고 공과금 업무 경력 이 2년이상인 자 2. 9급(상당)이상 공무 원으로서 공과금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삭 제>			
	9 급 상당	· 공과금 자료 의 정리보존 · 공과금 업무 분석	1. 고등학교 졸업이상 인 자로서 2월이상 전산교육 이수자 2. 고등학교 졸업이상 인 자로서 관련분 야에 상응하는 근 무경력 6월이상인 자				

6. 구의회 관련분야

현 행				개 정 안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구의회 전문위원	5급 상당	의안 심의 및 의사 진행보좌	1. 4년제대학졸업자 로서 관련분야 경 력이 3년이상인 자 2. 서울특별시 6급이 상 공무원으로서 일반행정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3.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 고 인정한 관련 분야 경력자	구의회 전문위원	5급 상당	의안 심의 및 검토 보고	1. 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후 1 년이상 관련분 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 학위 취득후 3 년이상 관련분 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 야 실무경력자 5. 8년이상 관련분 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 상당이상의 공 무원으로 2년이 상 관련분야 실 무경력자 7.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
			<신 설>	구의회 전문위원	6급 상당	의안 심의 및 검토 보고	1. 관련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 학위 취득후 1 년이상 관련분 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 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이상 의 학력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 야 실무경력자

현행				개정안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구의회 전문위원	6급 상당	의안 심의 및 검토 보고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구의회 전문위원	7급 상당	의안 심의 및 검토 보고	1. 관련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2. 학사학위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6.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속기사	7급, 8급, 9급 상당	생략		( 현행과 같음 )			

## 7. 위생분야

현 행				개 정 안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영양사	8급 상당	구내식당 급식관 리	영양사자격증 소지자	영양사	7급 상당	구내식당 급식관 리	1.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이 상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에서 환자급식 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2.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4년이 상 집단급식소 에서 급식업무 에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자

## 8. 기타분야

현 행				개 정 안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직명(위)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광 고 물 관 리 원	7급 상당	옥외광고물관리	1. 4년제대학이상 졸업 자로서 관련학과 를 이수한 자 2. 전문대학이상 졸업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이 상인 자 3. 고등학교이상 졸업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이 상인 자	<삭 제>			